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

법 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4. 15. 박홍근의원 외 171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4. 15.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

(2022. 4. 18.)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4. 18.)

상정 · 축조심사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4. 19.)

상정 · 축조심사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4. 20.)

상정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4. 25.)

상정 · 축조심사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4. 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2. 4. 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2. 4. 27.)

상정 · 위원회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박홍근의원)

개인의 생명 ·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음. 그러나,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의욕하였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이에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해당 법률안은 2022년 4월 18일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주민 위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위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